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간주 규정 마련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94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94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5. 13.

(3) 회 부 일 : 2026. 5.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기본원칙 조항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권에 의해서도 지원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안 제4조제1항),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원칙) ① <u>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u>	제4조(기본원칙) ① <u>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u>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u>	② <u>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u>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③ ~ ⑥ (생 략)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
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
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
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
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
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권자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
공받을 수 있는 경우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
1항, -----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 ---

야 한다.

1. ~ 3.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

-----.

1. ~ 3. (현행과 같음)

⑦ ----- 제6항까지 ----- 지원, 신청 간주 -----.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 또는 제5조에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 또는 제5조에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1. ~ 4. (생략) ② ~ ⑦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제1항1)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 제5조2)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도 친족,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

1)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수급자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급여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급여는 일반적으로 수급자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하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급여 수급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 정보 부족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신청을 간주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제4조제1항에서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제6조 및 제7조에서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 신청주의 체계에 직권지급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사회보장급여는 수급권자의 권리 실현이라는 측면과 함께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직권지급을 허용할 경우에는 급여 신청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급여 수급에 따른 의무 및 부담 등에 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직권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⁴⁾에 따른 수급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자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공공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26호,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42호)은 지원대상자 등의 동의 없이도 법 제8조제1항5)에 따른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6)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 등 다양한

-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보험정보”라 한다)

6) 「사회보장기본법」

형태의 급여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동일하게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임.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와 같은 일부 서비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이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간주되어 급여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상담·사례관리·재활·돌봄 등 대인 서비스 성격의 급여는 지원대상자의 의사와 참여가 서비스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대상자가 해당 서비스를 원하지 않거나 이용의사가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신청을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신청 간주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급여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한정하거나 적어도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⁷⁾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7) 소병훈의원안(제2218296호), 안상훈의원안(제2218326호), 박성민의원안(제2219592호), 남인순의원안(제2219842호)

3. 관계 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신청주의 원칙으로 인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주의로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 외 금융재산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욕구 등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등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일반법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급여 전체에 대해 안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직권으로 조사 및 지급하도록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안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 등의 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8